부산광역시 사하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20 -----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1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97회 사하구의회(정례회)
제6차 총무위원회(2001. 12. 18)원안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구용대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근대 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(2001. 3. 28 법률6443호)이 개정 2001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

○ 현행 문화재보호법 또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구세감면조례로 전액 감면하고 있어

○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감면하게 위함임

나. 주요내용

○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으나

○ 문화재보호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각각 50%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

○ 구세감면조례제8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자구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이번 조례개정은 2001. 7.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개정 내용이므로 개정 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